

##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 (교부용)

### 제 1 조 (목적)

-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하 "거래기업"이라 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을 준수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MP(Marketplace)"라 함은 거래기업간 전자적 형태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e-Marketplace)을 운영하는 업체 또는 시장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상거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MP 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받는 업체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MP 자체를 말한다.
5. "일반거래"라 함은 구매기업이 MP 등을 통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은행의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6.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MP 등을 통한 거래기업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와 구매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이 지급위탁 사실을 확인하여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시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은행의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7. "결제수단"이라 함은 현금, 일반자금대출, 구매자금대출, e-구매론, 상생벤처구매론 등과 같이 매매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은행의 결제상품을 말한다. 단, 구매자금대출과 상생벤처구매론은 매매보호거래의 결제수단으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8. "연지급결제수단"이라 함은 전항의 결제수단 중 구매대금의 지급 만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e-구매론과 구매대금의 지급만기일을 외상매출채권(또는 지급승인명세)의 결제일로 지정하는 상생벤처구매론을 말한다.
9. "결제"라 함은 물품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 등의 행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급지시"라 함은 일반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사전에 약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지급위탁"이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향후 은행에게 권리이전(인수)를 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계좌이체지시 또는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에 구매대금 상당액을 경과계정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e-구매론 승인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권리이전(인수)"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배송받은 물품을 검수한 후, 위탁대금을 인출하거나 각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최종 지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위탁대금"이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지급위탁 지시에 따라 경과계정에 입금한 자금을 말한다.
14. "결제예정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MP 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을 하기로 예정한 날을 말한다.
15. "인수통지예정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권리이전(인수)를 하기로 예정한 날을 말한다.
16. "재접수"라 함은 은행이 MP 로부터 통보 받아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매매계약의 내역과 거래기업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이 상호 다른 경우, MP 가 스스로 혹은 거래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으로 변경하여 은행에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매매계약변경"이라 함은 MP 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매매계약취소"라 함은 MP가 기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거래기업의 의뢰를 받아 은행에 기 통보한 매매계약의 내역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경과계정"이라 함은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의 권리이전 시점까지 위탁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도적 계정으로, 은행의 별단예금 또는 가상계좌 등을 말한다.
20. "수수료"라 함은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21. "B2B 이용수수료"라 함은 거래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2. "중개수수료"라 함은 거래기업이 MP 의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대가로 MP 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 3 조 (서비스 이용방법)

- ① 거래기업은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거래기업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인증서에 의거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③ 거래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용 인터넷뱅킹(이하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 입금계좌, 결제계좌, 수수료지급계좌, 이메일주소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의 변경시 지체없이 은행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④ 거래기업이 현금거래를 제외한 타 결제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 제 4 조 (업무처리 기본절차)

- ① 일반거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은행은 MP 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과 수수료금액을 통보받아, 이를 거래기업이나 MP 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2. 거래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된 매매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계약의 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MP 로 하여금 재접수 또는 매매계약변경/취소 하도록 조치한다.
  3. 구매기업은 매매계약시 정한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은행에 지급지시 한다.
  4.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약정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 ② 매매보호거래는 전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절차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구매기업은 매매계약시 정한 결제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은행에 지급위탁 한다.
  2. 구매기업이 지급위탁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을 경과계정에 입금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위탁한 후 이러한 지급위탁 및 경과계정 입금 사실을, 판매기업의 지정 이메일주소로 통보하거나,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한다.
  3. 구매기업은 매매계약시 정한 인수통지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판매기업으로부터 배송받은 물품을 검수한 후 은행에 권리이전(인수) 한다.
  4. 은행은 경과계정에서 위탁대금을 인출하여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으로 하여금 정해진 결제수단의 만기일 이전에 대금입금 요청(이하 "선입금 요청"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약정한 결제수단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 제 5 조 (변경처리절차 및 제한)

- ① 거래기업이 재접수,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MP 에 의뢰한 후 MP 의 승인 및 MP 의 은행에 대한 통보의 절차 및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② 재접수, 매매계약변경 및 매매계약취소 절차와 제한사항은 업무별로 아래와 같이 따른다.
  1. 재접수
    - (1)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재접수를 할 수 없다.
    - (2)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경우에는 재접수를 할 수 없다.
  2. 매매계약변경
    - (1)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2)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이후에도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를 하기 전까지는 인수통지예정일을 변경하는 매매계약변경은 가능하다.

### 3. 매매계약취소

(1) 일반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 단, 연지급결제수단의 경우,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거래기업이 MP 에 의뢰한 후 MP 의 승인 및 MP 의 은행에 대한 통보의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지시 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보호거래의 경우,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따라 당해 구매대금이 경과계정에 입금되거나 약정한 결제수단으로 지급위탁된 이후에도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를 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매매계약 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위탁취소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매매보호거래에서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이후에는 매매계약변경 및 매매계약취소는 불가하다.
- ④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는 제 1 항에서 정한 절차 및 순서에 추가하여 거래기업이 모두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그 절차가 완료된다. 단, MP 와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거래기업이 모두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거래기업은 매매계약변경 또는 매매계약취소 이후라도 매매계약의 상대방 거래기업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 행한 매매계약변경 또는 매매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⑥ 거래기업은 MP 에 대한 매매계약의 재접수/취소/변경의뢰, MP 의 승인 등 MP 가 제 1 항에 따라 은행에 통보하기 이전의 절차에 대하여는 당해 MP 와 별도 약정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6 조 (결제수단 등)

- ① 지급지시 또는 지급위탁에 수반되어야 하는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 중 MP 와 사전 협의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계좌이체지시
  - 2. 일반자금대출 실행
  - 3. 구매자금대출 인수/결제
  - 4. e-구매론의 승인
  - 5. 상생벤처구매론의 지급승인
- ② 구매기업이 전항 소정의 구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정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당해 구매대금을 출금한다.
- ③ 구매기업이 전항 소정의 구매대금 결제를 타점권 자기앞수표 입금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된 자금을 대해서만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매매보호거래에서 지급위탁 결제수단이 연지급결제수단인 경우 지급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지급만기일 이후라도 거래기업이 제 5 조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취소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위탁취소의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매매계약번호 등 관리)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및 지급위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매매계약번호단위로 관리하며, 동일한 매매계약번호에 결제예정일이 수개인 경우에는 결제예정일 단위로 관리한다.
- ② 한 개의 매매계약번호에는 한 개의 결제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은행은 일반거래 및 매매보호거래에서 제 6 조 제 1 항 소정의 구매대금 결제가 매매계약번호 및 결제(지급위탁) 예정일 관리단위별로 전액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제 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 제 8 조 (위탁대금 처리)

- 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대금을 인출하여 판매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 1.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하는 경우
  - 2.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위탁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은행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대금 중 해당 금액을 구매기업에 반환한다.
  1. 매매계약취소 절차가 완료된 경우
  2. 판매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상 위탁대금을 구매기업에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매기업이 착오로 지급위탁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제 9 조 (이메일 통보 및 거래내용의 확인 등)

- ① 은행은 전산처리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구매기업의 지급위탁에 대하여 제 4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정한 이메일 통보를 수행한다.
- ② 전항의 경우, 거래기업은 수신받을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MP 및 거래기업이 개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서비스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하여야 하며, 거래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 를 통하여 거래한 내용과 그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거래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 를 통하여 거래한 내용과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은 거래기업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 를 통하여 거래한 내용과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기업이 원래 거래한 내용대로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실을 당해 거래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거래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 를 통하여 기 행한 거래를 착오 등의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 제 10 조 (수수료)

- ① B2B 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 가 별도로 약정한 B2B 이용수수료 요율계산방법에 따르며, MP 와의 약정변경으로 B2B 이용수수료 요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수료 징구대상 거래기업 등에 이메일 통지를 하거나, 또는 변경사실을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해당 MP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되 변경 1 개월전부터 1 개월 동안 알린다.
- ② 은행은 거래기업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B2B 이용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금액을 매매계약번호 및 관리단위별로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하여야 하며, 거래기업 등은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취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은행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은행은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2 항 제 4 호의 계좌입금 시를 비롯하여 지급지시나 권리이전(인수) 이후에, 미리 지정된 계좌에서 B2B 이용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다.
- ④ MP 와의 계약에서 은행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징구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수수료 징구대상 거래기업 등의 계좌에서 중개수수료를 인출하여 사전에 MP 가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MP 는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은행이 수수료 징구대상 거래기업 등의 지정된 계좌에서 수수료를 인출하기 위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의 잔액이 인출해야 할 수수료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동 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 ⑥ 은행은 지정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하여야 할 수수료를 징구하지 못한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제 11 조 (정보제공 등의)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MP 에 통지할 수 있으며, 거래기업은 이러한 은행의 통지에 동의하며 차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구매기업 여신한도 조회, 매매계약 내용 접수, 재접수,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 등 MP 가 서비스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은행에 조회하거나 통보하는 사항에 대한 은행의 응답
2. 가상계좌 번호
3. 지급지시, 지급위탁, 결제(지급위탁), 권리이전(인수) 사실
4. 재접수,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거래기업의 승인 통지 사실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12 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거래기업은 제 3 조 제 3 항 소정의 기재사항, 제 9 조 제 2 항 소정의 이메일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은행에서 정한 전산상의 방법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전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작업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13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은행은 MP 또는 거래기업이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유효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14 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거래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래기업은 은행이 MP로부터 통보받아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한 매매계약건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따른 전자결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야 전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 제 15 조 (면책)

- ① 은행은 MP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기업인터넷뱅킹에 게시한 매매계약 등의 내용(재접수, 매매계약변경, 매매계약취소 등 일체의 경우를 말함)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거래기업이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약관에 따른 거래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은행은 판매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 3 자를 통하여 확인한 지급위탁 사실을 신뢰하여 물품을 배송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은행은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④ 은행은 거래기업이 제 9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기업이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과 은행이 상이하게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은행은 거래기업이 제 3 조 제 3 항 소정의 기재사항 또는 제 9 조 제 2 항 소정의 이메일 주소를 다르게 기재, 등록하거나 제 12 조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이 약정과 관련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인 경우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⑦ 은행은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거래기업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6 조 (접근수단의 관리)

- ① 거래기업은 이 약관에서 정한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스마트카드, 자물쇠카드, OTP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수단”이라 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거래기업은 접근수단을 제 3 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 17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율 기준표

거래금액(결제금액)	정액수수료	정률수수료
일백만원 이하	1,000 원	0.2%(최저수수료 500 원)
일천만원 이하	3,000 원	0.05%(최저수수료 2,000 원)
오천만원 이하	7,000 원	0.02%(최저수수료 5,000 원)
일억원 이하	12,000 원	0.015%(최저수수료 10,000 원)
일억원 초과	20,000 원	20,000 원

※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기준표는 위와 같으나,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은행과 MP 사간의 사전 협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MP 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거래하는 MP 사에 문의하거나 MP 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1. B2B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다음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 B2B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은행이 받는 수수료
  - ▶ MP 중개수수료 : MP 매매계약 중개에 따라 MP 사가 받는 수수료
2. 수수료부담주체
  - ▶ MP 사이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판매기업 부담인지 구매기업 부담인지 결정합니다.
3. 수수료 납부방법
  - ▶ 판매기업부담시 : 거래대금 입금시 차감하여 수수료 납부
  - ▶ 구매기업부담시 : 이용약관시 신고된 구매기업명의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수수료 출금 납부
4. MP 중개수수료는 은행과의 약정없이 MP 사에서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며, 은행은 징구대행업무만 수행하므로 MP 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